

농수산

수 신 : 경상북도의회 의장

제 목 :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2014년 3월 7일

발의자 : 한창화 의원외 7인
찬성자 : 13인
(발의자 · 찬성자 서명부 붙임)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한창화 의원외 7인)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한창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4. 3.

발 의 자 : 한창화·변우정·나기보
이정호·정상진·정영길
강영석·권영만의원(8인)

찬 성 자 : 13인

1. 제정이유

- 도내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및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 수립(안 제3조)
- 나. 도지사는 약용작물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4조)
- 다. 도지사는 농업인에게 생산·저장·가공·포장 및 마케팅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안 제5조)
- 라.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보급과 약용작물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 촉진(안 제6조 및 제7조)
- 마. 도지사는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 실시(안 제8조)
- 바.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사.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 지도 및 감독(안 제10조 및 제11조)

3. 조례안 : 붙임참조

4. 관련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7조, 제20조
- 기획재정부령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의 [별표] 작물의 분류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 해당부서 검토의견
 - 제9조(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1항 : 비상설기구 삽입 → 반영
 - 제9조제5항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에 따라 위촉하며, 위원회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촉된다 → 반영

6. 참고사항

- 발의자 및 찬성자 서명 명부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용작물”이란 기획재정부령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의 ‘별표’에 따라 규정된 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용작물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약용작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
3. 약용작물의 생산성 촉진을 위한 전략
4.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및 기술지원 인력육성 방안
5. 약용작물 연구개발 사업
6. 약용작물의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농업인·생산자 단체에게 약용작물의 생산·저장·가공·포장 및 마케팅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약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술보급)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약용작물 관련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약용작물 관련 교육·체험사업
4. 약용작물 관련 품종,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과 관련하여 기술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술개발 등의 촉진)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농업인·생산자단체에게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산 관리)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재배·생산 등 관련 정보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은 약용작물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작물 육성 및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상설기구로 경상북도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교수 등 약용작물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상북도의회 도의원
3. 약용작물 농업인·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국장,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 식품의약과

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친환경농업과장이 된다.

-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에 따라 위촉하며, 위원회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촉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약용작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농업인·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생산자 단체 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7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수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농수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수산물과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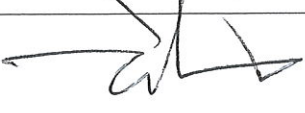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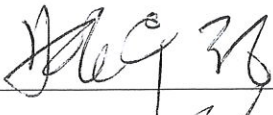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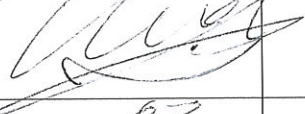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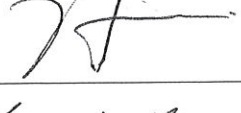
□ 기획재정부령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의 [별표] <개정 2013.7.9>

작물의 분류(제2조 관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식량작물	미곡	논벼, 밭벼
	맥류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두류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기타 두류
	잡곡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울무, 기타 잡곡
	서류	고구마, 감자(봄·가을·고랭지)
채소	엽채류	배추(일반·고랭지·김장), 양배추, 시금치, 상추, 미나리, 쪽갓, 부추
	과채류	수박, 참외, 오이, 호박(단·일반), 토마토(일반·방울), 딸기, 가지, 메론, 피망(파프리카 포함)
	근채류	무(일반·고랭지·김장), 당근, 토란, 우엉, 연근
	조미채소	고추(멀칭:Mulching, 터널:Tunnel), 마늘[한지형(寒地型)·난지형(暖地型)], 양파(조·중·만생종), 파(대파·쪽파), 생강
	기타채소	근대, 달래, 신선초, 기타 채소
특용·약용작물	유지작물	유채, 참깨, 들깨, 땅콩
	약용작물	강활, 고본, 구기자,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목단, 방풍, 백지, 백출, 사삼, 산수유, 산약, 소엽, 시호, 오미자, 의이인, 작약, 지모, 지황,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향부자, 형개, 황금, 황기, 기타 약용작물
	특용작물	박하, 차, 호프, 닥나무, 수세미, 결명자, 농산버섯(양송이·느타리·팽이·영지 등), 기타 특용작물
	기타	면화, 삼, 모시, 왕골, 인초, 해바라기, 아주까리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감(뽕은감·단감), 자두, 대추, 매실, 유자, 기타 과수
뽕나무 기타작물	뽕나무	뽕나무
	사료작물	호밀, 옥수수, 기타 사료작물(귀리·유채 등)
	전매작물	인삼, 담배
	녹비작물	호맥, 자운영, 기타 비료용 작물
	화훼 기타작물	화훼 관상용 나무, 묘목(소나무, 사과 등), 기타 재배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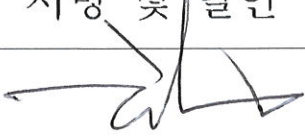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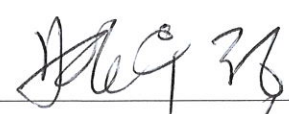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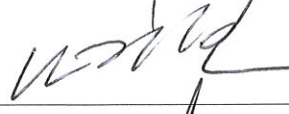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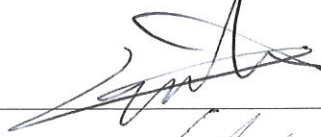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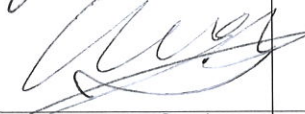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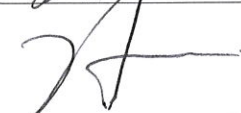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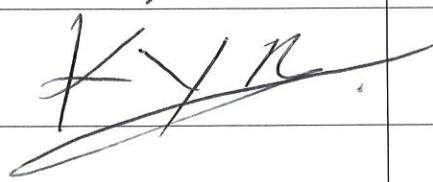
발의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성명	서명 및 날인	비고
한창화		
변우정		
나기보		
이성호		
정성진		
정영길		
강명석		
권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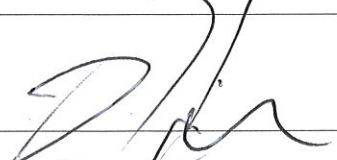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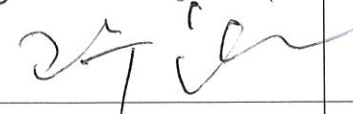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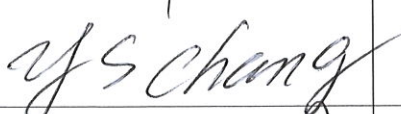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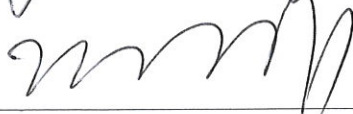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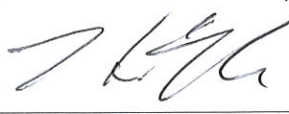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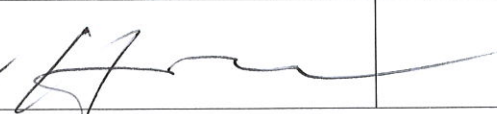
발의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성명	서명 및 날인	비고
한창현		
변우정		
나기보		
이성호		
정승진		
정영길		
강명석		
권영민		

찬성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성명	서명 및 날인	비고
이은진		
이은진		
이은진		
이은진		
이은진		
이은진		
이은진		
이은진		
이은진		
이은진		
이은진		
이은진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예산 추계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위 근거 규정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 비용추계의 결과
 - 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 수립에 따른 전문기관 용역비 : 50,000천원
 -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및 여비 : 연 2,380천원
 - 참석수당 : 70,000원 x 7명(위촉위원) x 2회 = 980천원
 - 참석여비 : 100,000원 x 7명(위촉위원) x 2회 = 1,400천원

4. 작성자 : 친환경농업과 농업7급 김병삼(950-2272)